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5.12.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 토 보 고 서

- 마리면 율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 위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부지 구입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9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11. 29

라. 의안번호 : 제2005 - 81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 고
행정 재산	거창군 일원(미정)	건 물	115	95,000	율리 보건진료소
		토 지(답)	500	35,000	
“	위천면 장거리 522-4	토 지(답)	1,555	10,500	위천소방 파출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율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 마리면 율리 177-1번지에 소재한 율리보건진료소는 건물이 1984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를 161-1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율리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30백만원중 KBS방송국이 50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나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닌 KBS방송국의 통보에 의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대상지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보건복지부의 KBS지원방법에 의하면 공사는 KBS와 계약된 곳에서 실시하고 공사대금은 KBS가 직접회사에 지급하며 대상기관 선정은 KBS가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계획서에 의하면 율리보건지소는 공사기간 2006.2 ~ 3.6까지 완공하여 2006. 3. 6(월) 18:00 <KBS 6시 내고향> “백년간약”편에 방송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방송시점에 맞추기 위하여는 부지매입, 설계 및 시공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대상지역은 경지정리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 지역으로 건축행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구입

○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km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 건립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부담하여 해당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였으나, 도의 방침변경에 따라 금번 소방파출소 건물부지에 대하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나 토지는 거창군 명의로 건물은 도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 건물은 도로와 100m이상 떨어져 있고 폭이 4m 정도여서 신속한 출동과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상존하여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국,지방도와 접한 적정규모의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소방파출소로 승격되고 장비가 보강되면 대형소방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됨.

○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행위가능한 것이며,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5. 참고자료

□ 현 울리보건지소 현황

-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울리 177-1번지
- 규 모 : 부지 142㎡, 건물 21.9평
- 건물구조 및 건축연도 : 조적조, 1984년

□ 현 위천소방지서 현황

- 관할지역 : 6개면(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면)
- 소방인력 : 1일 t방관 1명 근무(24시간 교대근무)
- 소방장비 : 소방펌프차 1대
- 현 청사위치 :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22번지
- 부 지 : 200평(거창군 소유)
- 건 물 : 49평(RC조, 스라브1층, 1998년 준공)